
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(안)

2021. 5. 18.

고 용 노 동 부

순 서

I. 그간의 경과	1
II.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	1
III. 기대효과	3
IV. 향후일정	3

I. 그간의 경과

◇ 코로나19에 따른 실업, 일자리 불안 등 청년의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한 지원 필요

□ 주요 회의

- 4.13. 「제16회 국무회의」*, 5.17. 「당정 협의」

* (대통령님 말씀)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,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 민간 기업이 더 좋고,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.

□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(안) 마련

- 관계부처 협의(기재부·고용부)를 통해 추진계획(안) 마련

☞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·의결하려는 것임

II.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

1

추진 배경

□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시에도 고용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 예상

* (위기 전 수준 회복 소요 기간, 기재부, '20.12.) ▲ '98년 외환위기: 38개월(하강기 15개월, 회복기 23개월) ▲ '09년 금융위기: 16개월(하강기 6개월, 회복기 10개월)

- '21.4월 취업자 수는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이 증가하였으나, 코로나19 이전 '19.4월 390만명 수준에는 못 미침
- '21.4월 청년확장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은 25.1%로서 123만명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존재(청년 경제활동인구의 28.9%)

청년고용 지원 핵심사업인 **청년추가고용장려금***의 '21년 신규 지원 (9만명)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연도 중 신규지원 종료(5.31.)

* 중소·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 (연 최대 900만원, 최대 3년), '18~'21년 한시사업('21년 신규지원 9만명, 1조2천억)

○ 청년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되는바,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 하고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 긴급요

2

추진 방향

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'21년 한시사업으로 「청년채용특별장려금」 추진

○ '청년디지털일자리', '특별고용촉진장려금' 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(정규직, 1년 등)을 갖도록 설계

* 청년디지털일자리: 3개월 이상 근로계약, 월 최대 18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

** 특별고용촉진장려금: 6개월 이상 근로계약,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

3

지원 내용

(지원대상)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·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
* 단, 사행·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

(지원요건) ①'20.12.1.~'21.12.31. 기간*에 청년(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+ ②전체 근로자 수 증가**

*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

**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

(지원내용) 月 75만원 × 1년(연 최대 900만원)

4

수행주체

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 등 사업을 총괄 운영

○ 전달체계로서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신청 접수

5**추진체계**

-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·시달 →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장려금 신청·접수 →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

6**소요예산**

- 2년간 7,290억원, 9만명('21년 2,250억원, '22년 5,040억원)
 -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보강

Ⅲ. 기대효과

-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
- 청년층이 락다운(lockdown)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버팀목 제공

Ⅳ. 향후일정

- ◇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친 영향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연도중에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긴급하게 추진
- ◇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 완료 즉시,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
- 고용보험위원회 개최(고용부, 5.26.)
 -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「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」 의결
- 세부 운영방안 수립·시달(고용부, 6월)
 - 사업 기간 및 지원요건 확정, 신청·접수·지급 등 업무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세부 운영방안 수립·시달
- 사업 신청·접수(고용센터, 6월)
 -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·접수
- 심사 및 지급(고용센터, 7월~)